

#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 제 3 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소집 통지일 : 2016년 9월 23일(금)
2. 회의일시 : 2016년 10월 5일(수) 11:00
3. 장 소 : 포스코센터 스틸클럽(서관 18층)
4. 이사정수 : 10명, 재적이사 : 10명
5. 참석자

- 이사(9명) : 우종수, 이화일, 서범석, 황은연, 손동현, 금난새, 윤세용, 예병운, 권종원
- 감사(1명) : 이우규
- 배석(2명) : 홍대승 본부장, 서중치 사무국장

### 6. 회의안건(의결사항)

- (1) 정관 변경 (2) 임원 임면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4) 교원징계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 선임
- (5) 2017년도 교원 신규채용 계획 (6)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

### 7. 회의 진행 내용

**의장(이사장 우종수)**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재적이사 10분 중 9분이 참석하여 개최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오늘 이사회에서는 정관 변경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 의안인 정관 변경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주세요.

(홍대승 본부장 “붙임1” 내용과 같이 정관 변경 내용을 설명하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하시므로 정관 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호 의안인 임원 임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해주세요.

(홍대승 본부장 제안 설명)

제2호 의안인 임원 임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재단 임원으로 재임하고 계신 양창완 이사님과 김교태 감사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의사를 표명하심에 따라 후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김교태 감사님의 경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임하는 개방감사로 선임 절차에 따라 차기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창완 이사님의 후임으로 금일 신규 선임되는 이사님의 임기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입니다.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이사 후보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전남교육청 시설과장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안 시설과장님은 한국방송통신대에서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하시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주요경력력을 말씀드리면, 영암, 보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전남교육청 교육협력관을 거쳐 현재 전남교육청 시설과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하시므로 임원 임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호 의안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해주세요.

(홍대승 본부장 제안 설명)

제3호 의안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16.10.23일자로 만료되므로 후임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학운위 협의체에서 추천한 4명과 이사회에서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전·현직 교장선생님 중 김성정 포철고 교장, 전인득 포철중 교장, 오성균 전 광철남초 교장 선생님

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하시므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호 의안인 교원징계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 선임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주세요

(홍대승 본부장 제안 설명)

제4호 의안인 교원징계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선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위원과 학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2016년 8월 31일부로 사립학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인위원과 학교위원 외에 외부위원을 1명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법인위원 3명과 학교위원 3명에서 학교위원 중 초중등의 경우는 교무부장 교사를 유치원의 경우는 중견교사를 빼고, 외부위원 1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2016년 11월 1일부로 선임코자 합니다. 외부위원 후보로는 우리재단에서 근무하시다가 2016년 2월말에 정년 퇴임하신 김순복 선생님입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하시므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호 의안인 2017년도 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주세요

(홍대승 본부장 제안 설명)

제5호 의안인 2017년도 교원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용 사유는 퇴직 교원 발생에 따른 충원과 인천포스코고가 2017년부터 3개 학년을 운영하게 됨에 따른 충원입니다. 채용인원은 포철고 체육 1명, 포철공고 전기·전자 1명, 포철중 화학 1명, 인천포스코고 국어, 수학, 영어, 역사, 지리, 물리, 체육 각 1명으로 총 10명입니다. 채용절차는 모든 전형형을 재단 자체 운영하고자 하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형을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용시기는 2017년 3월 1일부입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하시므로 2017년도 교원 신규채용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호 의안인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를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주세요.

(홍대승 본부장 제안 설명)

다음은 제6호 의안인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자사유는 포철중 장애인용 승강기 증축분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함입니다. 증자재산 내용은 포철중 2교사 장애인용 승강기로 정원 15명, 면적은 28제곱미터이며, 증자금액은 1억4천5백만원으로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전액 보조를 받아 설치하였습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하시므로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심의를 끝냈습니다만 출석임원을 대표하여 간서명 하실 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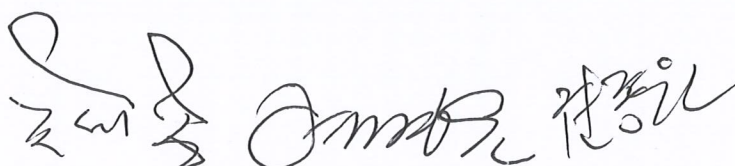
이사 서범석 : 윤세용 이사님, 예병윤 이사님, 권종원 이사님을 추천합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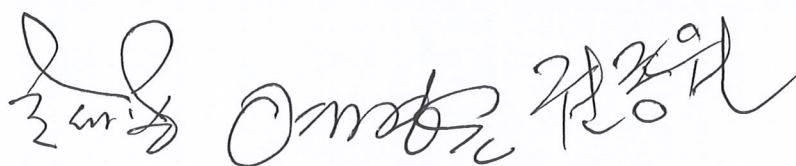
**의장(이사장 우종수)**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하시므로 윤세용 이사님, 예병윤 이사님, 권종원 이사님께서 출석 임원 대표로 회의록에 간서명하실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장(이사장 우종수)** 이상으로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제3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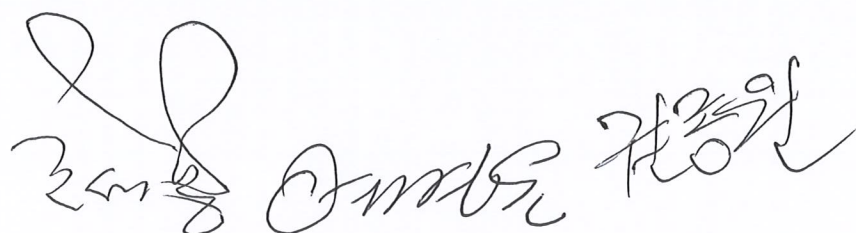


# #붙임 1. 정관개정

현행	개정
<p><b>제21조의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b>                      ① 제21조 내지 제21조의 3에서 정한 개방이사 및 감사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포항제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되, 제99조의 2에서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체에서 4인, 이사회에서 3인을 추천한다.</p>	<p><b>제21조의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b>                      ① 제21조 내지 제21조의 3에서 정한 개방이사 및 감사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포항제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되, 제101조의 2에서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체에서 4인, 이사회에서 3인을 추천한다.</p>
<p><b>제32조 (해산)</b>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b>교육과학기술부장관</b>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b>제32조 (해산)</b>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b>교육부장관</b>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b>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b>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b>교육과학기술부장관</b>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p>	<p><b>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b>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b>교육부장관</b>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p>
<p><b>제34조 (청산인)</b>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b>교육과학기술부장관</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34조 (청산인)</b>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b>교육부장관</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37조 (휴직의 사유)</b>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의2 (신설)</p>	<p><b>제37조 (휴직의 사유)</b>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p>
<p><b>제38조 (휴직의 기간)</b>                      1. 제37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4.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6의2 (신설)</p>	<p><b>제38조 (휴직의 기간)</b>                      1. 제37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의2 제37조 제7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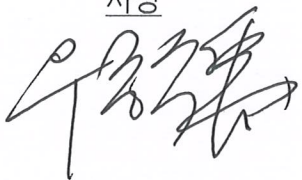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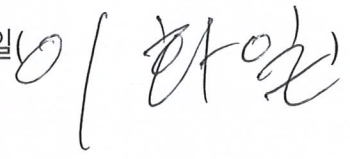
현행	개정
<p>제40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7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p>	<p>제40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7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p>
<p>제66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6.....(생략)..... 6의2. (신설) 6의3. (신설)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제66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6.....(생략).....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제68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p>	<p>제68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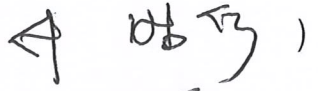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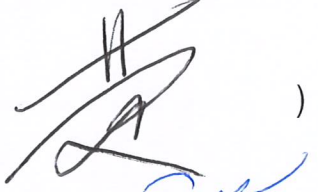
(폐회 : 2016년 10월 5일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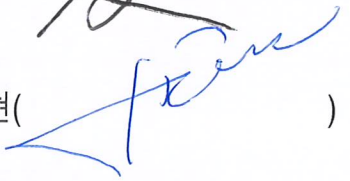
서명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이 사 장 우 종 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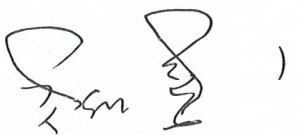
이 사 이 화 일 (  )


이 사 서 범 석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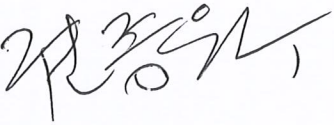
이 사 황 은 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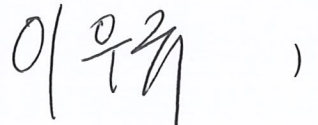
이 사 손 동 현 (  )

이 사 금 난 새 (  )

이 사 윤 세 용 (  )

이 사 예 병 윤 (  )

이 사 권 종 원 (  )

감 사 이 우 규 (  )